

수입 과·채가공품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

- 베트남산 과·채가공품(냉동제품)에 대해 반입 전 세균수 검사결과(적합)를 제출해야만 수입신고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베트남의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과·채가공품**(냉동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①LEE&KIM COMPANY LIMITED, ②DUNG DAT AGRICULTURE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LTD, ③YEN LINH PRIVATE ENTERPRISE ④MINH KHOI TRADING IMPORT EXPORT CORPORATION, ⑤HANOI GREEN FOODS CO.,LTD ⑥ATL GLOBAL COMPANY LIMITED, ⑦AMEII VIETNAM JOINT STOCK COMPANY

** 과·채가공품 : 과일류, 채소류 또는 버섯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 검사명령이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베트남산 과·채가공품(냉동제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세균수*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과·채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 식품에 존재하는 총 미생물 수를 측정하는 지표로, 가공 위생관리 전반적인 청결 수준과 유통 중 미생물 증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참고로 식약처는 2012년부터 총 27개국 42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해제하여 왔다. 오는 9월 30일부터는 이번 베트남산 과·채가공품을 포함해 총 17개 품목에 대한 검사명령이 운영된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

(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 현황

담당 부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책임자	과 장	손영욱 (043-719-2201)
		담당자	사무관	유행일 (043-719-2210)



순번	시행일자	대상식품	국가	검사항목
1	'16.2.29.~'26.2.28.	천연향신료 중 분말형태의 제품	인도	금속성이물
2	'18.10.22.~'25.10.21.	베리류(블루베리, 링곤베리, 빌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방사능 (요오드, 세슘)
3	'19.4.23.~'26.4.22.	능이버섯	러시아 우크라이나	방사능 (요오드, 세슘)
4	'20.10.22.~'25.10.21.	천연향신료 중 분말형태의 제품	중국 (2개 제조업소)	금속성이물
5	'21.3.31.~'26.3.30.	참다랑어 (생식용 수산물)	일본(수출국)	살모넬라
6	'21.10.22.~'25.10.21.	과자 (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 제외)	인도 (4개 제조업소)	세균수
7	'22.3.31.~'26.3.30.	기타소금	파키스탄	불용분
8	'22.12.24.~'25.12.23.	목이버섯(자실체, 건조)	중국	잔류농약 1종 (카벤다짐)
9	'23.3.31.~'26.3.30.	고추(열매)	베트남	잔류농약 8종 (디니코나졸, 톨펜피라드, 트리사이클라졸, 퍼메트린, 디메토에이트, 아이소프로티올레인, 메토미노스트로빈, 모노크로토포스)
10	'23.6.30.~'26.6.29	침출차	중국	잔류농약 5종 (피리다벤, 디노테퓨란, 오쏘페닐페놀, 프로클로라즈, 클로르피리포스)
11	'24.3.29.~'26.3.28.	과.채가공품 (비살균 제품)	중국 (2개 제조업소)	대장균

순번	시행일자	대상식품	국가	검사항목
12	'24.6.28.~'26.3.27.	빵류	중국 (4개 제조업소)	보존료
13	'24.9.30.~'26.9.29.	당절임 (밀봉 및 가열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제품은 제외)	베트남 (2개 제조업소)	타르색소
14	'24.12.30.~'25.12.29.	냉동부세	중국	에톡시퀸
15	'25.3.31.~'26.3.30.	불로초	중국	잔류농약 15종 (말라티온, 사이퍼메트린, 사이할로트린, 아세타미프리드, 아세토클로르, 이미다클로포프리드, 이프로디온, 카벤다짐,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르피리포스, 트리아조포스, 트리플록시스트로빈, 펜프로파트린, 포레이트, 프로클로라즈)
16	'25.6.30.~'26.6.29	새우 및 기타 수산물가공품(새우 함유량 30% 이상)	베트남 (3개 제조업소)	독시싸이클린
17	'25.9.30.~'26.9.29.	과·채가공품(냉동제품)	베트남 (7개 제조업소)	세균수